

의정활동보고서

제208회 임시회(2006. 7. 7 ~ 7.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원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8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는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3백만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의원 55명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 전원은 풍요로운 미래 경북건설을 위해 지금부터 알차게 설계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마음속 깊이 다짐한 대로 한 치의 흔들림과 부끄럼 없이 항상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우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는 그 동안 제7대 의회까지 지방자치 도약을 위해 다져 놓은 반석위에 지방자치를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의회를 대표하여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운영 방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생 현안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의회의 위상이 강화 되고 생산적인 의정이 구현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으로 정책개발과 건설적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진정, 청원 등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견지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했던 뜨거운 마음자세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경북의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4년 후에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백만 도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 정보화를 지향하는 세계 선진도시와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경북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희망찬 21세기 경상북도 건설을 위해 3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힘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원은 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8대 도의회 개원식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相千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 공포사항

부 록

조례안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의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8회 임시회는 2006년 7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7월 1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9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7월 7일(금)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오후 4시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7월 10일(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선임을 위하여 정회하였다. 정회중 상임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한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간사선임보고와 상임위원장, 간사의 인사를 청취 후 산회 하였다.

7월 12일(수)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후 휴회 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7월 12일부터 태풍피해지역 현지확인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를 하였다.

7월 18일(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 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감의 이임인사를 청취한 후 경상북도의회 제208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6-12호(2006년 6월 28일)

라. 집회일시 : 2006년 7월 7일(금)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6년 7월 7일 ~ 7월 18일 (12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 (누계 4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과학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정	경제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 회	19	2	3	3	3	2	3	3	
누 계	19	2	3	3	3	2	3	3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7. 7(금) 14:00 (제1차)	1. 의장·부의장 선거 • 의 장 : 이상천 • 부의장 : 방대선, 안순덕 2.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 16:00 개원식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 7. 10(월) 11:00 (제2차)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 김응규 의원 - 기획과학위원장 : 이현준 의원 - 행정사회위원장 : 이우경 의원 - 교육환경위원장 : 장대진 의원 - 농정위원장 : 방유봉 의원 - 경제문화위원장 : 이상효 의원 - 건설소방위원장 : 황상조 의원 3.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보고	원안가결
2006. 7. 12(수) 11:00 (제3차)	1. 도정 주요업무 보고	
2006. 7. 18(화) 11:00 (제4차)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4:0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박순범 의원	
2006. 7. 14(금) 16:00 (제2차)	1.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2. 제209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3:2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박진현 의원	
2006. 7. 13(목) 11:00 (제2차)	○ 업무보고 -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2006. 7. 14(금) 11:00 (제3차)	○ 업무보고 - 과학정보산업국, 공무원교육원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3:3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손진영 의원	
2006. 7. 13(목) 11:00 (제2차)	○ 업무보고 - 경도대학, 자치행정국	
2006. 7. 14(금) 11:00 (제3차)	○ 업무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자연환경연수원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3:0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박순열 의원	
2006. 7. 13(목) 14:00 (제2차)	○ 업무보고 - 환경산림수산국 및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2006. 7. 14(금) 11:00 (제3차)	1. 업무보고 - 경상북도교육청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정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3:0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이종원 의원	
2006. 7. 14(금) 10:30 (제2차)	○ 업무보고 -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3:0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최윤희 의원	
2006. 7. 13(목) 14:00 (제2차)	○ 업무보고 - 경제통상실	
2006. 7. 14(금) 11:00 (제3차)	○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7. 10(월) 13:00 (제1차)	○ 간사선임의 건 - 간사 : 박기진 의원	
2006. 7. 13(목) 14:00 (제2차)	○ 업무보고 - 건설도시재난국	
2006. 7. 14(금) 11:00 (제3차)	○ 업무보고 - 소방본부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3 (3)	3 (3)	3 (3)					
조 례 안	소 계	2 (2)	2 (2)	2 (2)				
	의회 제안							
	도지사 제출							
	교육감 제출	2 (2)	2 (2)	2 (2)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안								
결의안	1 (1)		1 (1)					
기타안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3 (3)	3 (3)	2 (2)				1 (1)				
의 회 운 영	1 (1)	1 (1)					1 (1)				
기 획 과 학											
행 정 사 회											
교 육 환 경	2 (2)	2 (2)	2 (2)								
농 정											
경 제 문 화											
건 설 소 방											
특 별											
본회의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행 정 사 회										
교 육 환 경										
농 정										
경 제 문 화										
건 설 소 방										
특 별 위 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의회운영						
기획과학						
행정사회						
교육환경						
농 정						
경제문화						
건설소방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6. 7. 3)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 (2006. 7. 11)
경상북도교육감 (2006. 7. 4)	200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 상임위 (2006. 7. 11)
경상북도교육감 (2006. 7.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7. 7)
경상북도교육감 (2006. 7.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7. 7)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6.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006. 7. 3 (제2927호)
2006. 6.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7. 3 (제2928호)
2006. 6. 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7. 3 (제2929호)

부 록

- 조 례 안 : 2건
- 결 의 안 : 1건

【조례안 : 2건】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7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240,000 원의 월정수당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당해 월정수당 지급 월의 위원 임기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 및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5]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미 불화)

구 분	항공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가	40	205	133	150	180	210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위 원	2등정액 (이코노미 클래스)	가	35	166	107	140	170	195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비고 : 1.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④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및 원격지회의출석비는 [별표 2] 교육위원회회기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며, 원격지회의출석시 소요되는 교통운임은 교육위원회 출석하는 당일과 귀향시에만 지급한다.</p> <p>⑤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별표 4]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p> <table border="1" data-bbox="167 1279 710 1480"> <tr> <td>구분</td> <td>일비(1일당)</td> </tr> <tr> <td>의장</td> <td>10,000원</td> </tr> <tr> <td>부의장</td> <td>10,000원</td> </tr> <tr> <td>위원</td> <td>10,000원</td> </tr> </table> <p>[별표 5]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p> <table border="1" data-bbox="167 1641 710 1872"> <tr> <td>구분</td> <td>항공임</td> </tr> <tr> <td>의장</td> <td>1등 정액</td> </tr> <tr> <td>부의장</td> <td>1등 정액</td> </tr> <tr> <td>위원</td> <td>1등 정액</td> </tr> </table>	구분	일비(1일당)	의장	10,000원	부의장	10,000원	위원	10,000원	구분	항공임	의장	1등 정액	부의장	1등 정액	위원	1등 정액	<p>[별표 4]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p> <table border="1" data-bbox="815 1279 1358 1480"> <tr> <td>구분</td> <td>일비(1일당)</td> </tr> <tr> <td>의장</td> <td>20,000원</td> </tr> <tr> <td>부의장</td> <td>20,000원</td> </tr> <tr> <td>위원</td> <td>20,000원</td> </tr> </table> <p>[별표 5]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p> <table border="1" data-bbox="815 1641 1358 1872"> <tr> <td>구분</td> <td>항공임</td> </tr> <tr> <td>의장</td> <td>1등 정액</td> </tr> <tr> <td>부의장</td> <td>1등 정액</td> </tr> <tr> <td>위원</td> <td>2등 정액 (이코노미 클래스)</td> </tr> </table>	구분	일비(1일당)	의장	20,000원	부의장	20,000원	위원	20,000원	구분	항공임	의장	1등 정액	부의장	1등 정액	위원	2등 정액 (이코노미 클래스)
구분	일비(1일당)																																
의장	10,000원																																
부의장	10,000원																																
위원	10,000원																																
구분	항공임																																
의장	1등 정액																																
부의장	1등 정액																																
위원	1등 정액																																
구분	일비(1일당)																																
의장	20,000원																																
부의장	20,000원																																
위원	20,000원																																
구분	항공임																																
의장	1등 정액																																
부의장	1등 정액																																
위원	2등 정액 (이코노미 클래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7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시행
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4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교육감 소속”을 “교육감 소속하에”로 한다.

제15조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지급”을 “수당을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 에 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 19조(<u>지방자치법</u>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 조(<u>지방자치법시행령</u> 제15조의2 준용) 의 규정에 의하여</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4조로 준용되는 <u>지방자치법시행령</u>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u>회기수당</u>을 말 한다. 3. (생략)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위원 <u>회 기수당</u>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위원 <u>회기수당</u>의 1년분에 상당 한 금액 3. (생략) <p>② (생략)</p>	<p><u>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지방교육자치 에 관한법률</u>」 (「<u>지방자치법</u>」) (.....) (「<u>지방자치법</u> 시행령」 제15조의3)</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의정활동비</u>”라 「<u>지방자치법</u> 시행령」 <u>의정활동비</u>를 3. (현행과 같음)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의 정활동비</u> 2. : <u>의정활동비</u>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u>공무원연금법시행령</u></p> <p>② (생략)</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u>공무원연금법시행령</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p> <p><u>교육감 소속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 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u></p>	<p>제9조(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p> <p><u>교육감 소속하에</u></p> <p>.....</p>
<p>제15조(심의회 수당 등)</p> <p>.....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 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지급</u> 할 수 있다.</p>	<p>제15조(심의회 수당 등)</p> <p>..... 「<u>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 변상조례</u>」 <u>수당을 지급</u></p>

【결의안 : 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5
----------	---

제안년월일 : 2006. 7. 1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2006년 하반기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5년 결산승인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의정활동보고서(제208회 임시회)

2006. 7 인쇄 / 2006.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